

강사인사규정

2019. 6. 1. 제정
 2019. 9. 1. 일부개정
 2019.12. 1. 일부개정
 2020. 3. 1. 일부개정
 2020. 6.29. 일부개정
 2021. 9. 1. 일부개정
 2022. 3. 1. 일부개정
 2023. 3. 1. 일부개정
 2023. 7. 1. 일부개정
 2023. 9. 1. 일부개정
 2026. 3. 1. 일부개정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강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교원의 임무 중에서 강의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1. >

1.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
2.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가인 경우 <신설 2023. 7. 1.>

② 외국인은 제1항에 부가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3. 1.>

제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 3. 1.>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5조(임용원칙) ① 강사의 임용은 본 규정에서 정한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에 의한다.

② 강사는 3월 1일과 9월 1일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1. 9. 1>

③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는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공개채용에서 1순위로 추천된 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하며, 그 절차는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3. 9. 1.>
- 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직·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2. 학생군사교육단, 사이버국방학과, 계약학과 교과목만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할 경우
 3. 계절수업 강의만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할 경우 <개정 2023. 9. 1.>
 4.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추천자가 없는 경우 <신설 2023. 3. 1.>
 5.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 및 차순위후보자가 임용을 포기하고 강의 가능한 기임용 강사가 없는 경우 <신설 2023. 3. 1.>
 6.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략기술 중 해당 분야의 현장 전문가인 경우 <신설 2023. 7. 1.>
 7. 그 밖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3. 3. 1, 제6호에서 이동 2023. 7. 1.>
- ⑦ 특별채용은 연속학기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6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

제2장 신규임용

- 제6조(채용공고)** ① 단과대학,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독립 학부, 부속교육기관(이하 ‘대학(원)’이라고 함)의 장은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학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 등(이하 ‘학과(부)’라고 함)의 필요한 강사인원 및 임용계획을 수합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9. 1>
- ② 교무처장은 임용할 인원을 편성하고 최소 5일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기간, 지원과목, 임용인원, 지원자격, 우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③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 또는 매학기 최소 1과목의 강의를 가능한 자 등을 우대하거나 필수 지원자격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삭제 2021. 9. 1>

- 제7조(제출서류)** ① 지원자는 강사임용지원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3. 3. 1. >
- ② 지원자는 강사임용지원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개정 2023. 3. 1.>
 2. 학력증명서
 3. 강의계획안(본교 양식) <개정 2023. 3. 1.>
 4. 교육철학기술서(자유양식, 2매 이내)
 5. 그 밖의 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서류
- ③ 경력 및 업적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

- 제8조(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을 위한 기재·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심사절차를 중단하거나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정지한다.

- 제9조(강사임용심사위원회)** ①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등에 강사의 신규임용·재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부)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학과(부) 또는 관련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신규임용, 재임용, 교과목별 필요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 ③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며, 학과(부)에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학과(부)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학(원)장 또는 해당 학과(부)의 다른 교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 ④ 강사임용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사안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1.>
- ⑤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9. 1.>

제10조(위원의 제척, 회피 또는 기피) ①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지원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일 때에는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은 지원자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원자에 한하여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 ③ 지원자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평가: 학력, 경력 및 강의계획안
2. 전공평가: 전공영역 적합성 및 학문적 우수성
3. 심층평가: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
- ② 제1항이 정하는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평가: 60점 (학력 20점, 경력 20점, 강의계획안 20점)
 2. 전공평가: 40점 (전공영역 적합성 20점, 학문적 우수성 20점)
 3. 심층평가: 20점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 20점)

제12조(기초평가: 학력) ① 기초평가 중 학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1. 대학(학사): A+(6점), A(5점), B+(4점), B(3점), C+(2점), C(1점)
2. 대학원(석사 및 박사): A+(14점), A(12점), B+(10점), B(8점), C+(6점), C(4점)
- ② 학위에 따른 우대조건이 채용공고 시 명시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차등을 둘 수 없다.
- ③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기초평가: 경력) ① 기초평가 중 경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용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연관된 직무를 담당한 경우에 한함
2. 증빙자료(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에 한함
3. 연구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해당 재직기관의 지명도, 근무연수, 직책,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함(연구경력은 Post-Doc., 연구소 연구원 등을 말하고,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등을 말함)
- ② 제1항의 연구 및 교육경력의 등급별 평가점수는 A+(20점), A(18점), B+(16점), B(14

점), C+(12점), C(10점), 부적격(0점)으로 한다.

제14조(기초평가: 강의계획안) ① 지원자가 제출한 강의계획안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평가방법의 엄정성
 2. 교육계획의 구체성
 3. 교육계획의 실천가능성
- ② 제1항의 강의계획안에 대한 등급별 평가점수는 A+(20점), A(18점), B+(16점), B(14점), C+(12점), C(10점), 부적격(0점)으로 한다.

제15조(전공평가: 전공영역 적합성) ① 전공영역 적합성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공, 임용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연구주제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한다.

- ② 전공영역 적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A+(20점), A(18점), B+(16점), B(14점), C+(12점), C(10점), 부적격(0점)으로 한다.

제16조(전공평가: 학문적 우수성) ①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질과 양을 동시에 평가하되, 연구실적의 양에 구애받지 않고 질적 우수성을 우선 고려한다.

- ② 연구실적의 질적 우수성 평가에 있어서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 ③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등급별 평가점수는 A+(20점), A(18점), B+(16점), B(14점), C+(12점), C(10점), 부적격(0점)으로 한다.

제17조(심층평가: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 ①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에 대한 평가는 교육철학기술서 등을 근거로 서면, 화상 또는 대면면접을 통해 실시한다.

- ②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에 대한 평가점수는 A+(20점), A(18점), B+(16점), B(14점), C+(12점), C(10점), 부적격(0점)으로 한다.

제18조(임용후보자 추천 등) ①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강사 임용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함에 있어 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후보자를 단독 추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강사임용심사위원회가 학과(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9. 1>
-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9. 1>

제19조(신규임용 평가를 위한 내규) ① 제11조 내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장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특별채용절차) 제5조제6항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특별채용을 위한 국내·외 전공인력을 조사한 후 회의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임용심사위원

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임용계약

제21조(임용예정자 통보) 임용예정자 통보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시스템과 이메일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조회 등) ①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또는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3.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신설 2023. 3. 1.>
4. 학력 및 경력 등 조회를 위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제3호에서 이동 2023. 3. 1.>
- ② 교무처장은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19.12. 1.>
- ③ <삭제 2019.12. 1.>

제23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개정 2021. 9. 1>

1. 임용기간
2.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3.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6. 그 밖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
- ② 재임용 심사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정하며,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임금 지급 지침」 및 임금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
- ③ 본교가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강사는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해당 강사가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임용취소 및 해지) ①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임용자격에 미달되거나 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의할 때 강사로 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임용지원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논문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3. <삭제 2023. 9. 1.>
4. 폐강 등의 사유로 담당과목이 모두 없어진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용이 취소된 강사에 대한 조치는 제8조를 준용한다.
- ③ <삭제 2023. 9. 1.>
-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용을 해지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강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의 강의준비분과 과목이 폐강될 때까지의 강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 강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추가선발) 이 규정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되어 근무 예정인 강사가

서면 등으로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임용후보자 중 차순위자를 임용한다. <개정 2023. 9. 1.>

1. 대학(원)장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정해진 차순위자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강사임용을 수용할 의사를 기한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한다.
2. 차순위자가 기한 내에 응답이 없거나 강사임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 차순위자를 상대로 제1호의 절차를 반복한다.
3. 대학(원)장은 강사임용을 승낙한 차순위자의 강의수락 확인 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 9. 1>

제4장 재임용

제26조(재임용 절차) ① 대학(원)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강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3년 재임용 절차보장 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에게는 기간 만료와 재임용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개정 2023. 3. 1.>

- ② 재임용 신청의사가 있는 강사는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임용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 등 학교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9. 1>
- ③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요건 충족여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정한 재임용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강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개정 2021. 9. 1>
- ④ 대학(원)장은 재임용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대학 또는 학과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3. 3. 1.>
- ⑤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서 및 대학 또는 학과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강사에게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다. <신설 2023. 3. 1.>
-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강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3. 1.>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 3. 1.>

제27조(재임용 평가를 위한 내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는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28조(재임용 절차보장)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강사에게만 제26조의 절차를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보장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기간 만료된 이후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통해서만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3. 3.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개편, 교과목 폐지, 휴직자 또는 파견자 복직, 전임교원 신규임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을 적용하기 전에 대학(원)장은 해당 강사가 근무 가능한 다른 대학(원)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제29조(소속 및 신분) ① 강사의 소속은 담당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학과(부), 부속 교육기관 등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학과(부), 부속교육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담당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학과(부), 부속교육기관이 다른 경우 재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2023. 9. 1.>

② 강사는 형의 선고, 임용계약,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강사는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해당하는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9. 1, 2022. 3. 1>

④ 강사에게 신규임용, 재임용, 재임용탈락, 면직 등의 신분변동이 발생하면 「사립학교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3. 3. 1.>

⑤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의무) ① 강사는 교육과정 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담당과목의 강의와 이에 따르는 교수자료 및 교수법 개발, 강의계획서 작성 및 공지, 성적평가 및 입력 등 강의와 직접 관계된 부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본교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② 강사는 다른 기관의 직무 또는 강의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3. 3. 1.>

제31조(강의시간) ① 강사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은 최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약정된 주당 강의시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차감한다.

③ 재직 중인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계절수업 과목의 환산 주당 강의시간은 해당 정규학기에 담당한 과목을 포함하여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29.>

④ <삭제 2022. 3. 1.>

제32조(근무조건) ① 강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관련 법률을 따르고 타 기관에 복수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금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

② 강사에게는 담당 교과목에 대해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강의를 계획·준비하고, 수강 학생의 학습지도·평가·환류 등 운영, 학사업무처리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의 대가를 본교의 강의료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강사의 임금은 매 학기마다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임금 지급 지침」 등 학교규칙에 따른다.

④ 강사의 퇴직금 지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3. 1.>

제33조(의원면직)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34조(직권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 및 그 밖에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제1항 단서조항
2.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제1항 각호
3.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4.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개정 2022. 3. 1>
5.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제1항 각호
6. 그 밖에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면직사유

② 제1항제6호를 이유로 면직하려면 임용계약서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③ 면직사유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거나 [별표 2]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퇴직한다.

1. 사망한 자
 2.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3.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재임용 절차보장 기간이 만료된 자
 4.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이 결정된 자. 다만, 이 경우 면직발령일에 당연퇴직한다.
 5. 재임용 거부되었거나 재임용 신청 의사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본조 신설 2023. 3. 1.>

제35조(직권면직 요구와 통지) ① 대학(원)장은 소속 강사 중에 제34조제1항 및 그 밖에 계약으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면직처분을 요구한다. 이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전조사를 한 후 면직처분을 요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면직의결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면직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면직사유서와 면직요구자의 의견서
3. 면직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
4. 그밖에 면직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③ 대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면직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해당 강사에게 면직요구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직처분 요구사실을 통지받은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직권면직 의결과 처분)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면직요구 사유와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강사의 면직여부를 의결한다.

② 면직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가 강사의 면직을 의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다.

④ 총장은 면직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강사에게 교부한다. 이 때 면직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37조(경고) ① 교원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잘못이 인정되기는 하나 직권면직사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장은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총장은 강의성과가 우수하여 본교에 기여한 탁월한 강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 6. 1.)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교규칙) 이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촉탁강사 임용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임용 중인 촉탁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촉탁강사 임용 규정」에 의해 촉탁강사로 이미 임용된 강사에게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촉탁강사 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9. 1.)

이 일부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개정, 제31조제4항 신설, 별지서식 5-1 제1조, 제3조제3항 개정, 별지서식 5-2 신설, 별지서식 6 제2조제4항 개정)

부칙 (2019.12. 1.)

이 일부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제2항 개정, 제3항 삭제)

부칙 (2020. 3. 1.)

이 일부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 신설, 제29조제4항 개정, 별지서식 5-1, 별지서식 5-2,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개정)

부칙 (2020. 6.29.)

제1조(시행일) 이 일부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 별지서식 5-1, 별지서식 5-2, 별지서식 7 개정)

제2조(계절수업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일부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 1], [별지서식 4-1], [별지서식 4-2], [별지서식 5-1], [별지서식 5-2],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별지서식 8], [별지서식 9] 개정)

제2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1) [별지서식 4-1], [별지서식 4-2]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2) [별지서식 8] 재임용 평가기준 중 강의평가결과 최소 요구 점수는 2021년 9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강사부터 적용하며, 2021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제, 제34조, [별지서식 10] 개정)

부칙 (2023. 3. 1.)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제5조 개정, 제7조 개정, 제22조 개정, 제26조 개정, 제28조 내지 제30조 개정, 제32조 개정, 제34조의2 신설, [별지서식 5-1], [별지서식 5-2], [별지서식 5-3] 개정, [별지서식 5-4] 신설, [별지서식 6] 개정, [별지서식 6-1] 신설, [별지서식 7] 개정, [별지서식 7-1] 신설, [별지서식 8] 개정)

부칙 (2023. 7. 1.)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 제5조 개정, [별지서식 4-2] 개정)

부칙 (2023. 9. 1.)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제24조 개정, 제25조 개정, 제29조 개정, 제33조 개정, [별지서식 4-2] 개정, [별지서식 5-2] 개정, [별지서식 5-4] 개정, [별지서식 6] 개정, [별지서식 6-1] 개정, [별지서식 7] 개정, [별지서식 7-1] 개정)

부칙 (2026. 3.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8] 개정)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강사 직권면직 요구사유 강사인사규정

강사 직권면직 요구사유

유형	사유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제1항 단서조항 -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1항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は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제1항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11. <삭제 2021. 9. 1>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특약사항	※ 신규임용계약 시 기재하여 계약서에 첨부함.

※ 면직사유가 제3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름

[별표 2] 강사 직권면직 판단기준 강사인사규정

강사 직권면직 판단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파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무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과와 관련한 비위 마.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바.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아. 부정청탁 자. 임금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면직-경고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학생 교육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면직 면직	경고 경고	
3. 직장 이탈(결강, 강의시간 변경)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결강 나. 무단결강 다. 그 밖의 직장 이탈(결강, 강의시간 변경) 금지 위반	면직 면직 면직	경고 경고 면직-경고	
4. 친절·공정성의무 위반	면직	경고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6. 청렴의무 위반 가.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타인으로부터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면직 면직 면직	경고 면직 면직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다. 성매매 라. 성폭력 마. 공연음란 행위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자.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차. 음주운전 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경고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 면직-경고	
8. 겸직신고 의무 위반	면직-경고	경고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면직	면직-경고	
※ 비고			

[별지서식 1] 강사임용지원서 강사인사규정

강사임용지원서

지원과목		접수번호	
------	--	------	--

인적 사항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요 학력 사항	학교명 및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졸업여부
		. . ~ . .		☐ 과정중 ☐ 수료 ☐ 졸업
		. . ~ . .		☐ 과정중 ☐ 수료 ☐ 졸업
		. . ~ . .		☐ 과정중 ☐ 수료 ☐ 졸업

자격 · 면허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주요 교육 · 연구 경력	기간	소속기관명	직위	경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연구 실적	제목	학술지/출판사	게재일자	저자수	참여형태

※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함

첨부: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지원을 위한 기재·입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어떤 제재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지원자 성명

(인)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2] 강사 신규임용 평가표(개별위원용) 강사인사규정

강사 신규임용 평가표(개별위원용)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지원과목		접수번호	

I. 기초평가 (총 60점)

가. 학력 (20점) ※ 블라인드 채용시 평가제외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대학 (학사학위, 6점)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14점)							
합계							

나. 경력 (20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부적격	
재직기관, 근무연수, 직책, 공헌도 등								

다. 강의계획안 (20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부적격	
평가방법의 엄정성, 강의계획의 구체성, 실천가능성								

II. 전공평가 (총 40점)

가. 전공영역 적합성 (20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부적격	
전공, 연구주제 등								

나. 학문적 우수성 (20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부적격	
연구의 질적 우수성 등								

III. 심층평가 (총 20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A+	A	B+	B	C+	C	부적격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								

총 점	점
-----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서식 3] 강사 신규임용 평가결과 총괄표 강사인사규정

강사 신규임용 평가결과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지원과목		접수번호	

■ 평가결과

평가항목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평균
기초 평가	학력							
	경력							
	강의 계획안							
전공 평가	전공영역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심층 평가	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잠재역량							

※ 평가위원(위원1~위원6) 란에는 평가위원의 성명 기재

평균점수	점
------	---

특이사항: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서식 4-1] 강사인사규정 강사 신규임용 추천서 (공개채용)

강사 신규임용 추천서 (공개채용)

본교의 「강사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자들을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임용(공개채용)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추천 결과

지원과목		(학수번호-분반) 교과목명	추천부서	
추천 대상자	1순위	(생년월일:)		
	2순위	(생년월일:)		
	3순위	(생년월일:)		

※ 추천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간 부족 시 별지사용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종합소견:

※ 공개채용 시, 규정에서 정한 복수 추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추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단독 추천사유를 종합소견란에 기재해야 함.

20 . . .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학(원)장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4-2] 강사 신규임용 추천서 (특별채용)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3. 9. 1.>

강사 신규임용 추천서 (특별채용)

본교의 「강사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사 신규임용(특별채용)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추천 결과

담당교과목	(학수번호-분반)교과목명 ※ 분반으로 과목개설여부 확인		추천부서	
추천대상자	(생년월일:)			
특별채용 사유 「강사인사규정」 제5조제6항 참고	1-1. 학기 중 발생한 6개월 미만의 휴직	()	대상교원(성명:)	
	1-2. 학기 중 발생한 6개월 이하 연구년	()		
	1-3. 학기 중 발생한 직위해제, 퇴직, 면직	()		
	2. 학생군사교육단, 사이버국방학과, 계약학과	()	※ 해당 사유를 기재 (증빙 불필요)	
	3. 계절수업	()		
	4. 첨단산업 현장전문가	()	※ 관련 첨단분야명 기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정 분야 중)	
5.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진행하는 부득이함이 인정될 만한 사유를 6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종합소견:

※ 강사 자격(「강사인사규정」 제3조 참고), 지원과목의 학점, 담당하는 주당 강의시간 등에 관하여 기재

20 . . .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학(원)장 서명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5-1] <개정 2023. 3. 1.> 강사 임용계약서 (공개채용) 강사인사규정

강사 임용계약서 (공개채용)

고려대학교 총장(이하 “甲”)과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속) 甲은 乙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부) 공개채용 강사로 임용한다.

제2조(임용기간) 乙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금) ① 甲은 매학기 시작 이후 25일 이내에 乙이 담당하는 강의와 강의시간을 바탕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강의가 미배정된 학기에는 임금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며 강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② 乙의 임금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Z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폐강 등으로 임용이 해지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방학 중 임금의 강의준비 분과 임용이 해지될 때까지의 강의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임금 지급 지침」 및 개별로 체결한 임금계약에 따른다.

제4조(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① 乙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일 및 주당 강의시간은 임금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팀티칭 등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분만 인정되는 강의의 경우에는 인정된 부분만 담당할 시간으로 한다.

④ 乙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직무 또는 강의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乙의 직무는 乙에게 배정된 강의이고 근무장소는 배정된 강의실 또는 현장이며, 휴일 및 휴가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5조(면직사유 등) ① 乙의 면직사유는 강사인사규정 제34조, [별표 1], [별표 2]를 따른다.

② 강사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경우 甲은 乙의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재임용 절차) 乙의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는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제7조(기타) 본 임용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강사에게 적용되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 특약사항 ◇

제1조(추가요건) ※추가되는 재임용 요건, 면직사유 등이 있을 경우 기재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강사 재임용 평가에 대한 지침」 1부.

○○○○년 ○월 ○일

계약당사자 甲: 고려대학교 총장 ○○○ [인]

계약당사자 乙: ○○○ [인]

입회인: ○○대학(원)장 ○○○ [인]

[별지서식 5-2] Lecturer Appointment Contract(Open Recruitment)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3. 3. 1., 2023. 9. 1.>

Lecturer Appointment Contract(Open Recruitment)

This Appointment Contract (hereinafter this “Contrac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hereinafter the “University”) and [Lecturer Name] (hereinafter the “Lecturer”) who agree as follows:

Article 1 (Affiliation) The University shall appoint the Lecturer as a lecturer of the [Department Name] of the [College Name] of Korea University via open recruitment.

Article 2 (Term of Appointment)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Lecturer shall commence on [Month][Day], [Year] and end on [Month][Day], [Year].

Article 3 (Wages) (1) The University shall, within 25 day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each semester, enter into a wage contract with the Lecturer based on the lectures in charge of and lecture hours taught by the Lecturer. A wage contract shall not be concluded for any semester in which lectures are not assigned to the Lecturer, and lecture fees shall not be paid to the Lecturer.
 (2) The University shall pay wages to the Lecturer’s bank account on the twenty-fifth of every month after deducting insurance premiums and any taxes and public utility charges.
 (3) In the event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terminates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Lecturer, such as course cancellation, the University shall pay the Lecturer part of university holiday wages that is for the Lecturer’s preparation for the aforementioned lectures and outstanding lecture fees up to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4) Details of matters pertaining to wage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Guidelines on the Payment of Wages to Lecturers and the individual wage contract entered into with the Lecturer.

Article 4 (Lecture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1) The Lecturer shall in principle be responsible for delivering lectures for a maximum of six hours per week per semester.
 (2) Lecture days and lecture hours of the Lecturer shall be subject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wage contract.
 (3) With respect to courses for which the Lecturer’s contribution is only partially recognized based on regulations separately provided for, such as team teaching courses, the Lecturer shall be responsible for delivering lectures to the extent the contribution is recognized.
 (4) The Lecturer shall comply with laws related to education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Act and regulations set forth by Korea University. In the event the Lecturer performs duties or deliver lectures at institutions other than Korea University while employed at Korea University, said Lecturer must report such fact to Korea University.
 (5) The duties of the Lecturer shall be the lectures assigned to the Lecturer, and the place of work shall be the lecture room or place assigned to the Lecturer. Holidays and leaves shall be subject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of Korea University.

Article 5 (Grounds for Dismissal, Etc.) (1) Grounds for dismissal of the Lecturer shall be as set forth in Article 34 and Annexes 1 and 2 of the Regulations on Personnel Affairs of Lecturers.
 (2) The University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in the event the circumstance specifi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4(1) of the Regulations on Personnel Affairs of Lecturers occurs.

Article 6 (Reappointment Procedures) Procedures for reappointment of the Lecturer, including advance notification of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appointment and reappointment requirement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Guidelines on Reappointment Evaluation of Lecturers.

Article 7 (Other Matters) Details of matters pertain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of Korea University that are applicable to lecturer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 (Additional Requirements) **Specify any additional requirements for reappointment or additional grounds for dismissal.*

IN WITNESS WHEREOF, this Contract is made in duplicate and signed by the University and the Lecturer, with each of them holding one copy.

Attachment: Guidelines on Reappointment Evaluation of Lecturers

[Month][Day], [Year]

Employer : _____, President, Korea University

Employee : _____

Witness : _____

[별지서식 5-3] 강사 임용계약서 (특별채용)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3. 3. 1.>

강사 임용계약서 (특별채용)

고려대학교 총장(이하 “甲”)과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속) 甲은 乙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부) 특별채용 강사로 임용한다.

제2조(임용기간) 乙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금) ① 甲은 임용일로부터 25일 이내에 乙이 담당하는 강의와 강의시간을 바탕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② 乙의 임금은 보험료 및 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후 Z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③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폐강 등으로 임용이 해지된 때에는 甲은 乙에게 임용이 해지될 때까지의 강의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임금 지급 지침」 및 개별로 체결한 임금계약에 따른다.

제4조(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① 乙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의일 및 주당 강의시간은 임금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팀티칭 등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일부분만 인정되는 강의의 경우에는 인정된 부분만 담당할 시간으로 한다.

④ 乙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직무 또는 강의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乙의 직무는 乙에게 배정된 강의이고 근무장소는 배정된 강의실 또는 현장이며, 휴일 및 휴가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5조(면직사유 등) ① 乙의 면직사유는 강사인사규정 제34조, [별표 1], [별표 2]를 따른다.

② 강사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할 경우 甲은 乙의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임용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강사에게 적용되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 특약사항 ◇

제1조(채용조건) 특별채용 강사에게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甲: 고려대학교 총장 ○○○ [인]

계약당사자 乙: ○○○ [인]

입회인: ○○대학(원)장 ○○○ [인]

[별지서식 5-4] Lecturer Appointment Contract(Special Recruitment) 강사인사규정 <신설 2023. 3. 1., 개정 2023. 9. 1.>

Lecturer Appointment Contract(Special Recruitment)

This Appointment Contract (hereinafter this “Contrac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hereinafter the “University”) and [Lecturer Name] (hereinafter the “Lecturer”) who agree as follows:

Article 1 (Affiliation) The University shall appoint the Lecturer as a lecturer of the [Department Name] of the [College Name] of Korea University via special recruitment.

Article 2 (Term of Appointment)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Lecturer shall commence on [Month][Day], [Year] and end on [Month][Day], [Year].

Article 3 (Wages) ① The University shall, within 25 day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each semester, enter into a wage contract with the Lecturer based on the lectures in charge of and lecture hours taught by the Lecturer. A wage contract shall not be concluded for any semester in which lectures are not assigned to the Lecturer, and lecture fees shall not be paid to the Lecturer.
 ② The University shall pay wages to the Lecturer’s bank account on the twenty-fifth of every month after deducting insurance premiums and any taxes and public utility charges.
 ③ In the event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terminates due to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Lecturer, such as course cancellation, the University shall pay the Lecturer part of university holiday wages that is for the Lecturer’s preparation for the aforementioned lectures and outstanding lecture fees up to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④ Details of matters pertaining to wage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Guidelines on the Payment of Wages to Lecturers and the individual wage contract entered into with the Lecturer.

Article 4 (Lecture Hours and Working Conditions) ① The Lecturer shall in principle be responsible for delivering lectures for a maximum of six hours per week per semester.
 ② Lecture days and lecture hours of the Lecturer shall be subject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wage contract.
 ③ With respect to courses for which the Lecturer’s contribution is only partially recognized based on regulations separately provided for, such as team teaching courses, the Lecturer shall be responsible for delivering lectures to the extent the contribution is recognized.
 ④ The Lecturer shall comply with laws related to education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Act and regulations set forth by Korea University. In the event the Lecturer performs duties or deliver lectures at institutions other than Korea University while employed at Korea University, said Lecturer must report such fact to Korea University.
 ⑤ The duties of the Lecturer shall be the lectures assigned to the Lecturer, and the place of work shall be the lecture room or place assigned to the Lecturer. Holidays and leaves shall be subject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of Korea University.

Article 5 (Grounds for Dismissal, Etc.) ① Grounds for dismissal of the Lecturer shall be as set forth in Article 34 and Annexes 1 and 2 of the Regulations on Personnel Affairs of Lecturers.
 ② The University may terminate the appointment of the Lecturer in the event the circumstance specifi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24① of the Regulations on Personnel Affairs of Lecturers occurs.

Article 6 (Other Matters) Details of matters pertain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regulations of Korea University that are applicable to lecturer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 (Recruitment Conditions) Reappointment shall not be guaranteed for specially recruited lecturers.

IN WITNESS WHEREOF, this Contract is made in duplicate and signed by the University and the Lecturer, with each of them holding one copy.

[Month][Day], [Year]

Employer : _____, President, Korea University

Employee : _____

Witness : _____

[별지서식 6] 강사 임금계약서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3. 3. 1., 2023. 9. 1.>

강사 임금계약서

고려대학교 총장(이하 “甲”)과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정규학기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금계약 대상) 乙의 소속 및 임금계약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대학(원) ○○학과(부)
2. 임금계약 학기: ○○○○학년도 ○학기 (임용기간:○○○○.○.○~○○○○.○.○)

제2조(임금) ① 乙의 학기 중 임금과 방학 중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 중 임금

담당교과목	분반	관장학과(부)	주당 강의시간	강의요일(교시)	강의료 기준액(원)
※ 학기 중 임금: 주당 강의시간*강의료 기준액*담당 강의 주수 ※ 해당 학기 담당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 폐강되는 경우 「강사임금 지급 지침」 제3조제3항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함 ※ 「강사임금 지급 지침」 제3조제4항에 따라 대단위강의에 대한 초과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계절수업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임금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강사임금 지급 지침」 제3조제5항에 따라 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임금 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승인을 받아 강의를 추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 수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기간동안의 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2. 방학 중 임금

항목	지급시기	산출기준
강의준비분	1학기 : 8월 2학기 : 다음 연도 2월	해당 정규학기 지급강의료의 1/16 (대단위강의 초과강의료 및 핵심교양 강의료 제외)
성적처리분	1학기 : 7월 2학기 : 다음 연도 1월	해당 정규학기 지급강의료의 1/16 (대단위강의 초과강의료 및 핵심교양 강의료 제외)

- ② 제2조제1항의 임금에는 담당하는 강의를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를 계획 및 준비하고 강의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 ③ 甲은 乙이 담당 강의를 결강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학기 중 임금을 결강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방학 중 임금 중 강의준비분은 임용포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 달에 지급한다.
- ⑤ 방학 중 임금은 정규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정부부담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甲: 고려대학교 총장 ○○○ [인]

계약당사자 乙: ○○○ [인]

입회인: ○○대학(원)장 ○○○ [인]

[별지서식 6-1] Lecturer Wage Contract 강사인사규정 <신설 2023. 3. 1., 개정 2023. 9. 1.>

Lecturer Wage Contract

This Wage Contract (hereinafter this “Contract”) for regular semester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hereinafter the “University”) and [Lecturer Name] (hereinafter the “Lecturer”) who agree as follows:

Article 1 (Application) The affiliation of the Lecturer and the semester subject to application of this Contract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Affiliation: [Department Name] of the [College/Graduate School Name]
2. Semester: [Spring/Fall] semester of [Year] (Term of Appointment: [Month][Day], [Year]–[Month][Day], [Year])

Article 2 (Wages) ① The Lecturer’s semester wages and university holiday wage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Semester Wages:

Course	Section	Department in Charge	Period	Schedule		Standard Lecture Fee (KRW)
				Day	Time Slot	

* Semester wages: lecture hours per week x standard lecture fee x number of weeks the course is to run

* In the event some or all of the courses the Lecturer is responsible for are canceled, the University shall pay lecture f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Payment of Wages to Lecturers.

*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Guidelines on the Payment of Wages to Lecturers, additional lecture fees may be paid to the Lecturer for large-scale lectures.

* In the event the Lecturer is assigned to deliver lectures for summer/winter courses, the University may pay the Lecturer additional lecture f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of the Guidelines on the Payment of Wages to Lecturers without having to conclude a separate wage contract with the Lecturer.

* In the event the Lecturer is assigned additional lectures upon approval after concluding a wage contract with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may pay the Lecturer additional lecture fees for the period during which additional lectures are delivered without having to revise the contract.

2. University Holiday Wages:

Category	Payment Period	Calculation Standard
Lecture preparation	Spring semester: August Fall semester: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1/16 of the lecture fees paid for the corresponding regular semester (excluding additional lecture fees for large-scale lectures and lecture fees for core general education courses)
Grade processing	Spring semester: July Fall semester: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1/16 of the lecture fees paid for the corresponding regular semester (excluding additional lecture fees for large-scale lectures and lecture fees for core general education courses)

- ② Wages in Article 2(1) shall be regarded to include wages set for not only the time spent by the Lecturer in delivering lectures but also the time spent in planning and preparing for such lectures and in undertaking any tasks incidental to them.
- ③ In the event the Lecturer is absent from any assigned lectures, the University may deduct from the wages the amount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lecture hours the Lecturer was absent from.
- ④ Part of university holiday wages that is for the Lecturer's preparation for lectures shall be paid one month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following semester upon consideration of particular circumstances pertaining to the Lecturer, such as withdrawal from appointment.
- ⑤ University holiday wages shall be paid only in relation to regular semesters and may be adjusted based on availability and exte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IN WITNESS WHEREOF, this Contract is made in duplicate signed by the University and the Lecturer, with each of them holding one copy.

[Month][Day], [Year]

Employer : _____, President, Korea University

Employee : _____

Witness : _____

[별지서식 7] 강사 임용 및 임금계약서 (계절수업 특별채용)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3. 3. 1., 2023. 9. 1.>

강사 임용 및 임금계약서 (계절수업 특별채용)

고려대학교 총장(이하 “甲”)과 ○○○(이하 “乙”)은(는) 다음과 같이 계절수업 임용 및 임금계약을 체결한다.

※ 본교에 재직 중이 아닌 자를 강사로 임용하여 계절수업을 하게 할 경우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속) 甲은 乙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과(부) 계절수업 특별채용 강사로 임용한다.

제2조(임용기간) 乙의 임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금 및 강의시간) ① 乙의 계절수업 임금은 다음과 같다.

담당교과목	분반	관장학과(부)	총 강의시간	강의요일 (교시)	강의료 기준액(원)
※ 계절수업 임금: 총 강의시간*강의료 기준액					

② 제1항의 임금에는 담당하는 강의를 교수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를 계획 및 준비하고 강의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甲은 乙이 담당 강의를 결강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임금을 결강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 특별채용 강사에게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근무조건) 乙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직무 또는 강의를 병행하여 수행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면직사유 등) ① 乙의 면직사유는 규정 제34조, [별표 1], [별표 2]를 따른다.

② 계절수업 특별채용 강사에게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甲: 고려대학교 총장 ○○○ [인]

계약당사자 乙: ○○○ [인]

입회인: ○○대학(원)장 ○○○ [인]

[별지서식 7-1] Lecturer Appointment and Wage Contract(Special Recruitment for Summer/Winter Courses) 강사인사규정 <신설 2023. 3. 1., 개정 2023. 9. 1.>

Lecturer Appointment and Wage Contract (Special Recruitment for Summer/Winter Courses)

This Appointment and Wage Contract (hereinafter this “Contract”) for summer/winter courses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hereinafter the “University”) and [Lecturer Name] (hereinafter the “Lecturer”) who agree as follows:

**This Contract shall be concluded in the event the University intends to appoint a person who is not currently employed at Korea University as a lecturer for summer/winter courses.*

Article 1 (Affiliation) The University shall appoint the Lecturer as a lecturer of the [Department Name] of the [College Name] of Korea University specially recruited for summer/winter courses.

Article 2 (Term of Appointment)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Lecturer shall commence on [Month][Day], [Year] and end on [Month][Day], [Year].

Article 3 (Wages and Lecture Hours) ① Wages for the Lecturer’s summer/winter courses shall be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table:

Course	Section	Department in Charge	Total Lecture Hours	Schedule		Standard Lecture Fee (KRW)
				Day	Time Slot	
Course name (course code)						
*Wages for summer/winter courses: total lecture hours x standard lecture fee						

② Wages in paragraph 1 shall be regarded to include wages set for not only the time spent by the Lecturer in delivering lectures but also the time spent in planning and preparing for such lectures and in undertaking any tasks incidental to them.

③ In the event the Lecturer is absent from any of the lectures, the University may deduct from the wages the amount proportionate to the number of lecture hours the Lecturer was absent from.

④ University holiday wages shall not be paid to lecturers specially recruited for summer/winter courses.

Article 4 (Working Conditions) The Lecturer shall comply with laws related to education including the Private School Act and regulations set forth by Korea University. In the event the Lecturer performs duties or deliver lectures at institutions other than Korea University while employed at Korea University, said Lecturer must report such fact to Korea University.

Article 5 (Grounds for Dismissal, Etc.) ① Grounds for dismissal of the Lecturer shall be as set forth in Article 34 and Annexes 1 and 2 of the Regulations on Personnel Affairs of Lecturers.

② Reappointment shall not be guaranteed for lecturers specially recruited for summer/winter courses.

IN WITNESS WHEREOF, this Contract is made in duplicate and signed by the University and the Lecturer, with each of them holding one copy.

[Month][Day], [Year]

Employer : _____, President, Korea University

Employee : _____

Witness : _____

[별지서식 8] 강사 재임용 평가표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1. 9. 1., 2023. 3. 1., 2026. 3. 1.>

강사 재임용 평가표

성명		교원번호		생년월일	
소속		임용기간			

본인은 재임용 신청의사가 있으므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평가항목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분반	교과목명	① 강의계획안 입력일자	① 결과	② 성적 입력 일자	② 결과	③ 강의 평가 점수	③ 결과
④ 특약사항									④ 결과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	--

* 인권과성평등교육은 계약 시작연도 ~ 재임용 신청 전까지 이수하고 재임용 신청 시 이수 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수 인정

[평가기준]

① 강의계획안 : 강의계획안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F로 판단(강의계획안은 개강일 전에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
② 성적입력 : 성적입력을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F로 판단
③ 강의평가결과
-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5%에 해당하면서 5.0만점 중 3.58 미만일 경우에는 F로 판단 <개정 2023. 3. 1., 2026. 3. 1.>
- 응답률이 50% 미만인 강의평가 결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이로 인해 심사할 강의평가가 없어진 경우에는 P로 평가
④ 특약사항 : 해당자에 한하여 특약사항란에 표시되며, 미충족 시 F로 판단

재임용 추천 여부	추천() / 거부()
--------------	-----------------------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심사소견: ※ 재임용 거부 시 그 사유를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

[별지서식 9]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표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1. 9. 1.>

강사 재임용 심사결과표

본교의 「강사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강사의 재임용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 심사결과

소속	교번	성명	기준 일자	발령 구분	심사소견	특약사항	추가 특약사항	신청 유무	배정예정 과목	추천 여부
										추천 / 거부

※ 재임용 대상인 모든 강사에 대해 작성하며(공간 부족시 별지사용 가능),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0 . . .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학(원)장 : 서명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10] 강사 경력 증명서 강사인사규정 <개정 2022. 3. 1.>

강사 경력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경력사항 :

근무기간		근무부서(교과목명)/개설대학	직위[시간]
부터	까지		

위의 경력사항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고 려 대 학 교 총 장

[별지서식 11] 강사 겸직 신고서 강사인사규정

강사 겸직 신고서

본교의 「강사인사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사항	신고내용
☐ 신규 ☐ 내용변경 ☐ 종료	○ 기관: ○ 직위: ○ 기간: ○ 담당업무: ※ 타대학 강의시 강의시간 기재요망
☐ 신규 ☐ 내용변경 ☐ 종료	○ 기관: ○ 직위: ○ 기간: ○ 담당업무:
☐ 신규 ☐ 내용변경 ☐ 종료	○ 기관: ○ 직위: ○ 기간: ○ 담당업무:
☐ 신규 ☐ 내용변경 ☐ 종료	○ 기관: ○ 직위: ○ 기간: ○ 담당업무:
☐ 신규 ☐ 내용변경 ☐ 종료	○ 기관: ○ 직위: ○ 기간: ○ 담당업무:

※ 신고된 내용은 고등교육통계 자료로 교육부에 보고됨

20 . . .

신고인: 소속

성명

서명

고려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12] 강사 겸직 신고대장

강사 겸직 신고대장

[illegible]